

# 시립 서울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공사

시 방 서

[ 지정폐기물처리 ]

2009 . 05. .



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

## A17010 지정폐기물 처리

## 1. 용역명

시립 서울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지정 폐기물의 처리에 한하여 적용한다.

## 2. 용역범위

본 용역의 업무범위는 현장 내 폐기물 보관 장소에서 상차, 운반, 처리하여 적법 절차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업무까지를 포함한다.

## 3. 주요공사내용

가. 폐기물 수집·상차·운반

나. 폐기물 처리

다. 폐기물 계량

라. 계근시설

계량시설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곳을 이용하고 동 용역과 관련된 계량시설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

## 4. 용어정의

가. 발주자

『발주자』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인 『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』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.

나. 수급인

『수급인』이라 함은 발주자에 대한 『계약상대자』를 말한다.

다. 지정폐기물

『지정폐기물』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·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 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“폐기물관리법시행령” 별표 1의 폐기물을 말한다.

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	A17000 - 1	시립 서울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공사
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**라. 수집·운반**

『수집·운반』은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.

**마. 처리**

『폐기물처리』는 폐기물의 소각, 중화, 파쇄,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,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.

**바. 계량시스템**

『계량시스템』은 현장에서 분리 선별된 발생 폐기물을 외부로 반출하기 전에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할 목적으로 발주자가 제작한 계량프로그램을 포함한 이와 연계된 계량에 필요한 시스템을 말한다.

**5. 일반지침**

가. 본 공사는 지방서에 의해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, 정부가 제정한 각종기준, 발주자의 규정 및 지침,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 하여 수행하여야 한다.

나. 수급인은 이 지방서에 “○○은 관련법규(조례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지방서에서 같다)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”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지방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(공사 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)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.

다. 이 지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하며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해석을 따른다.

- (a) 계약문서(이 과업 내용서를 포함한다.)
- (b)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,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
- (c)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(환경부)
- (d) 폐기물관리법,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
- (e) 산업안전보건법,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
- (f) 기타 환경관련 법규
- (g) 국어사전

**라. 수급인의 책임한계**

- (a)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

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	A17000 - 2	시립 서울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공사
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·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지정·조치하여야 한다.

- (b)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 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 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.
- (c)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, 통지,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.

마. 안전관리의 의무

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시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 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.

바. 법률준수의 의무

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.

사. 공사수행자의 교체

이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아. 공사착수

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.

- (a) 착수신고서
- (b) 현장대리인 선임계(이력서, 사용인감계)
- (c) 세부시행계획서(예정공정표 포함)
- (d) 장비투입계획
- (e) 계약자 서약서
- (f)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공사수행에 필요한 사항

자. 본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
차. 처리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.

카. 수량확인

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	A17000 - 3	시립 서울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공사
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수집·운반 및 처리한 폐기물수량은 폐기물인계인수서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참고 하여 현장반출확인서 및 계근증빙서류에 따라 확인한다.

타. 계약변경조건

- (a)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필요시
- (b)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
- (c) 폐기물 발생량 정산에 따른 폐기물 처리량 증감 반영시
- (d) 수량계산 착오가 있을 때

파. 인·허가 업무대행

본 용역 수행과 관련된 인·허가 업무 등은 수급자가 대행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따른 소요경비를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.

과. 발주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.

하. 폐기물 처리능력 부족으로 관계법규 위반사항 등 제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, 중간처리업체 변경은 발주자와 협의 후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.

## 6. 폐기물의 처리 기준

가. 계약자는 현장 내에 폐기물이 쌓이지 않도록 감독원이 지정하는 일자에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. 폐기물 처리의 지연으로 공사지연이 발생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지체상금을 부과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문제 발생시에는 민·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.

나.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

다.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,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

라. 폐기물과 관련하여 주변지역 주민으로부터 발생하는 민원은 계약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며, 특히 청사 공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고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.

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	A17000 - 4	시립 서울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공사
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## 7.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

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변경사항 발생시 반드시 변경허가를 득하여야한다.

- 가. 수집·운반·처리대상 폐기물의 변경
- 나.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나 영업구역의 변경
- 다.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(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·운반업의 경우)
- 라. 운반차량의 증차
- 마.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
- 바.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
- 사. 주요 설비의 변경 등 (이하 관계법령에 따름)

## 8. 폐기물 처리비

- 가. 폐기물 처리비 산정은 전산 처리된 계량증빙서(총중량, 공차중량, 실중량, 발주자, 공사명, 시공자, 차량번호 운반일시 및 시간 등이 기재되어야 함)를 작성하여 원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나. 폐기물 처리비는 정산처리를 원칙으로 한다. 발생하는 폐기물이 당초 예상한 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단가와 동일한 조건으로 증가되며 감소할 경우에는 감소된 수량을 공제하고 정산 처리한다.

## 9. 지정폐기물의 처리

### 가. 보관시 유의사항

- 1)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- 2) 폐석면은 가습 등의 조치 후 포대로 이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시멘트·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정화 처리하여 흘날리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 흘날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3)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- 4) 자체 무게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·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①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관할 시·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

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	A17000 - 5	시립 서울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공사
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- ②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관할 시·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
  - ③ 드럼 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흘러나올 우려가 없고 용기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(이 경우에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보관용기 취급과정에서 내용물이 외부에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·아스팔트 등으로 바닥을 포장하고 방류턱을 갖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)
- 5)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·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,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·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.

(배출자용)

지정폐기물 보관표지	
① 폐기물의 종류 :	② 보관가능용량 : 톤
③ 관리책임자 :	
④ 취급시 주의사항 ○ 보관시 : ○ 운반시 :	
⑤ 운반예정장소 :	

- 보관창고에는 보관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표지의 규격 :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× 세로 40센티미터 이상(드럼 등 소형용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 × 세로 10센티미터 이상)
- 표지의 색깔 : 황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

나. 처리 절차

